

국제삼보연맹 집행위원회 승인 2020년 1월
국제삼보연맹 집행위원회 개정 2021년 9월 29일

피아스 도핑방지 절차 및 정책



목차

제 1장 도핑검사 용어 및 범위.....	3
제 1 조 도핑검사 용어.....	3
제 2 조 적용 범위.....	5
제 2장 검사 기준.....	6
제 3 조 FIAS 검사 배분 계획.....	6
제 4 조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 FIAS 검사 대상자 풀 및 소재지 신고.....	8
제 5 조 FIAS 도핑 검사 체계.....	12
제 6 조 선수 통보.....	12
제 7 조 검체 채취 세션 준비.....	14
제 8 조 샘플 채취 절차 수행.....	20
제 9 조 도핑 검사 실험실.....	25
제 10 조 시료 분석: 결과 판정.....	25
제 11 조 선수에 대한 일반 의료 관리 및 치료용 면제(TUEs).....	26
제 3장 정보 수집 기준.....	28
제 12 조 정보 수집, 평가 및 활용.....	28
제 13 조 조사.....	29
제 4장 결과 관리.....	30
제 14 조 FIAS 반도핑 청문회 패널의 구성 및 책임.....	30
제 15 조 절차.....	30
제 16 조 항소.....	31

제 1 장 도핑검사 용어 및 범위

제 1 조 도핑검사 용어

혈액 채취 담당관(또는 BCO): 선수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할 자격을 갖추고 샘플 채취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공인 담당자.

관리 이력(Chain of Custody): 시료 제공부터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전달될 때까지 시료의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기관의 연속적인 과정.

동행자(Chaperone): 시료 채취 기관으로부터 훈련 및 권한을 부여받아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시료 채취 기관의 선택에 따름): 시료 채취 대상으로 선정된 선수에게 통보; 도핑 검사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수 동행 및 관찰; 도핑 검사 장소에 있는 선수 동행 및/또는 관찰; 그리고/또는 훈련을 통해 자격을 갖춘 경우 검체 제공 과정의 증인 및 확인.

도핑 검사관(DCO): 검체 채취 기관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권한을 부여받아 ISTI에서 DCO에게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는 공식 담당자.

도핑 검사소: 시료 채취 절차가 수행될 장소.

신고 불이행: 선수(또는 선수가 해당 업무를 위임한 제3자)가 정확한 위치 정보 신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위치 정보 신고에 명시된 시간 및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수를 찾을 수 있게 하거나, 필요 시 해당 위치 정보 신고를 업데이트하여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경기 기간: FIAS 반도핑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수가 참가 예정인 경기 전날 오후 11시 59분부터 해당 경기 종료 시점 및 해당 경기에 관련된 시료 채취 절차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

검사 불참: 해당 선수의 소재 신고서에 명시된 해당 일자의 60분 시간대 내 지정 장소 및 시간에 검사에 응할 수 없었던 경우.

사전 통보 없는 검사: 선수에게 사전 경고 없이 진행되며, 통보 시점부터 검체 제공까지 선수가 지속적으로 동행 감독을 받는 검체 채취.

무작위 선정: 표적 검사가 아닌 검사를 위한 선수 선정.

결과 관리 기관: 코드 제7.1조에 따라 검사 결과(또는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 증거) 및 청문회 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1) 반도핑 기관(예: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기타 주요 대회 조직, WADA, 국제 연맹, 국가 반도핑 기관)이거나 또는 (2) 반도핑 기구의 권한에 따라 그 규정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다른 기구(예: 국제 연맹의 회원인 국가 연맹)인 경우. 소재지 미신고 위반과 관련하여, 결과 관리 기관은 ISTI 제1.5.1조에 명시된 대로 한다.

시료 채취 기관: ISTI 요건에 따라 샘플 채취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1) 검사 기관 자체이거나; (2) 검사 기관이 해당 책임을 위임하거나 하도급한 다른 기관(예: 제3자 계약자)일 수 있다(단, 검사 기관은 항상 코드에 따라 샘플 채취와 관련된 ISTI 요건 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시료 채취 장비: 시료 채취 세션 중 언제든지 시료를 채취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용기

또는 장치. 시료 채취 장비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소변 시료 채취 시:

- 선수의 신체에서 배출되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채취 용기;
- 선수가 추가 소변을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부분 시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적절한 키트; 및
- 완전한 시료를 안전하게 보관 및 운반하기 위한 밀봉 가능하고 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병 및 뚜껑.

혈액 시료 채취용:

- 시료 채취용 주사 바늘;
- 시료를 안전하게 보관 및 운반하기 위한 밀봉 가능하고 변조 방지 장치가 있는 혈액 채취용 튜브.

샘플 채취 담당자: 샘플 채취 기관으로부터 샘플 채취 세션 중 업무 수행 또는 지원을 위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격을 갖춘 관계자들의 총칭.

샘플 채취 세션: 선수와의 최초 접촉 시점부터 선수의 샘플 제공 후 도핑 통제소를 떠날 때까지 선수가 직접 관여하는 모든 연속적인 활동.

분석에 적합한 비중: 최소 90mL 이상 150mL 미만인 시료의 경우, 굴절계로 측정 시 1.005 이상 또는 실험실 스틱으로 측정 시 1.010 이상이어야 한다. 150mL 이상인 시료의 경우 굴절계로 측정 시 1.003 이상이어야 한다.

분석에 적합한 소변량: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막론하고 최소 90mL.

팀 활동: 선수들이 팀의 일원으로서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스포츠 활동(예: 훈련, 이동, 전술 회의) 또는 팀의 감독 하에 수행하는 활동(예: 팀 의사에 의한 치료).

검사 배분 계획: 국제도핑방지기구(ISTI) 제4조 요건에 따라, 해당 기구가 검사 권한을 가진 선수들에 대한 검사를 계획하는 도핑방지 기구가 작성한 문서.

검사 권한: 특정 검체 채취를 승인한 기구로서, (1) 도핑방지 기구(예: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기타 주요 대회 기구,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국제연맹, 국가도핑방지기구)이거나 또는 (2) 반도핑 기구의 권한에 따라 그 규칙을 준수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다른 기구(예: 국제 연맹의 회원인 국가 연맹)를 의미한다.

실패한 시도 보고서: 등록된 검사 대상자 풀에 속한 선수로부터 샘플 채취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의 상세 보고서로서, 시도 날짜, 방문 장소, 해당 장소에서의 정확한 도착 및 출발 시간, 선수 찾기 위해 현장에서 취한 조치(제3자와의 접촉 내용 포함), 기타 시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기재한다.

소재지 미제출: 소재지 제출 실패 또는 검사 불참.

소재지 제출: ISTI 제1.3조에 따라 등록 검사 대상 선수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는, 해당 선수의 향후 분기 동안의 소재지를 명시한 정보.

제 2 조 적용 범위

2.1 본 규정, FIAS 반도핑 규칙 및 FIAS 반도핑 절차·정책의 근본적 근거

반도핑 프로그램은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다. 이 본질적 가치는 흔히 “스포츠 정신”이라 불리며, 각 선수의 타고난 재능을 헌신적으로 연마함으로써 인간의 탁월함을 윤리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핑 방지 프로그램은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지 물질 및 금지 방법의 사용 없이 인간적 탁월성을 추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핑 방지 프로그램은 규칙과 다른 경쟁자 존중, 공정한 경쟁, 평등한 경기장, 그리고 세계에 대한 깨끗한 스포츠의 가치 측면에서 스포츠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포츠 정신은 인간의 정신, 신체, 마음을 기리는 것이다. 이는 올림픽 정신의 본질이며, 스포츠를 통해 발견되는 가치에 반영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a) 건강
- b) 윤리, 페어플레이, 정직
- c) 규약에 명시된 선수 권리
- d) 탁월한 성과
- e) 인성과 교육
- f) 즐거움과 기쁨
- g) 팀워크
- h) 헌신과 책임
- i) 규칙과 법률에 대한 존중
- j) 자신과 다른 참가자에 대한 존중
- k) 용기
- l) 공동체와 연대

2.2 본 반도핑 절차 및 정책은 다음에 적용된다:

- a) 도핑 통제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FIAS(국제 삼보 연맹) 및 그 이사회 구성원, 이사, 임원, 지정 직원, 위임 제3자 및 그 직원
- b) 도핑 통제의 모든 측면에 관여하는 각 국가 연맹 및 그 이사회 구성원, 이사, 임원, 지정 직원, 위임 제3자 및 그 직원
- c) 다음의 선수, 선수 지원 인력 및 기타 개인:
 - i. FIAS, 국가 연맹, 또는 국가 연맹의 회원 또는 제휴 단체(클럽, 팀, 협회, 리그 포함)의 회원인 모든 선수 및 선수 지원 인력
 - ii. FIAS, 국가 연맹 또는 국가 연맹의 회원/제휴 단체(클럽, 팀, 협회, 리그 포함)가 주최, 소집, 승인 또는 인정하는 대회, 경기 및 기타 활동에 해당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선수 및 선수 지원 인원(개최 장소 불문)
 - iii. 자격 인증, 라이선스 또는 기타 계약적 합의 등을 통해 FIAS, 국가 연맹, 또는 국가 연맹의 회원 또는 제휴 단체(클럽, 팀, 협회, 리그 등 포함)의 도핑 방지

목적상 권한에 종속되는 기타 선수, 선수 지원 인력 또는 기타 개인. 국제 대회 참가 자격을 얻으려면 선수, 선수 지원 인력 또는 기타 개인은 소속 국가 연맹이 발급한 FIAS 라이선스 또는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FIAS 라이선스 또는 인증은 FIAS가 제공하는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선수, 선수 지원 인력 또는 기타 개인에게만 발급된다. 미성년자의 모든 서류는 법적 보호자의 공동 서명이 필요하다

- iv. FIAS 또는 그 국가 연맹의 정회원이 아니지만 특정 국제 대회 참가 자격을 원하는 선수. 이는 난민 선수에게만 적용된다.

제2장 검사 기준

제3조 FIAS 검사 배분 계획

- 3.1 FIAS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는 매년 FIAS 검사 배분 계획을 수립한다.
- 3.2 FIAS는 규정(Code)에 따라 관할권 내 선수(등록 검사 대상자 풀 내 선수 포함,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효과적인 수의 경기 중 및 경기 외 검사를 계획, 수행 및 문서화할 의무가 있다. FIAS 검사 배분 계획은 삼보의 신체적 요구사항(특히 생리적 요건), 도핑이 유발할 수 있는 능력 향상 효과, 삼보 각 단계별 보상 체계, 종목별 및 기타 도핑 유인 요인, 도핑 분석 통계·정보 수집·모니터링·후속 조치, 도핑 동향 연구, 해당 스포츠 내 도핑 가능성 정보, 이전 검사 배분 주기 결과, 삼보 내 도핑 이력 및 평가, FIAS 종목 내 잠재적 도핑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삼보 종목의 도핑 잠재 위험성과 가능성 있는 도핑 패턴을 평가한 결과를 기반으로 수립된다. 도핑 동향에 관한 연구 자료, 해당 스포츠 내 가능한 도핑 관행에 대해 접수된 정보/개발된 정보, 이전 검사 배분 계획 주기의 결과, 삼보 내 도핑 이력과 관련 평가, FIAS 스포츠 내 잠재적 도핑 패턴, 경력 분석, 훈련 기간 및 경기 일정, 그리고 가능한 도핑 관행에 대해 접수된 정보를 고려한다.
- 3.3 FIAS 검사 배분 계획은 FIAS가 수집한 새로운 정보 및 개발된 정보를 반영하고, 다른 반도핑 기구에서 수행한 검사를 고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 및 조정된다. 이 검토는 WADA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 3.4 FIAS 검사 배분 계획은 선수들이 FIAS 등록 검사 풀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량의 검사가 표적 검사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FIAS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 위원장이 표적 검사를 실시할 대상을 결정하는 데 관련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비정상적인 생물학적 지표
 - 부상
 - 예정된 대회에서 기권 또는 불참
 - 은퇴 전후 상태
 - 도핑을 암시하는 행동

- 갑작스러운 경기력 급상승
- 소재지 신고서 반복 미제출
- 도핑 위험 증가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소재지 신고(외딴 지역으로의 이동 포함)
- 선수의 스포츠 성적 이력
- 선수의 검사 이력
- 은퇴 전 검사 대상 고위험군이었으며 현재 은퇴에서 복귀하여 해당 스포츠에 재참여를 희망하는 선수
- 자격 정지 기간 후 선수 복귀
- 성적 향상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 도핑 연루 이력이 있는 코치나 의사 등 제3자와의 선수 연관성 및 ISTI 제11.0조에 따라 다른 반도핑 기구와 공유되거나 해당 기구가 개발한 제3자 정보 또는 정보 수집 결과

3.5 FIAS 검사 배분 계획은 해당 스포츠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수집된 검체 분석을 수행할 실험실을 지정할 것이다. FIAS는 검사 분배 계획에 시료 보관 전략 및 해당 시료 채취 관련 문서를 포함시켜, 코드, 국제 실험실 기준, 개인정보 보호 국제 기준에 따라 추후 시료 추가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료 분석 목적과 더불어 (이에 국한되지 않음)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실험실 권고사항
-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프로그램과 연계된 소급 분석의 필요성
- 선수 및 종목과 관련된 가까운 시일 내 도입 예정인 새로운 검출 방법
- ‘고위험’ 기준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는 선수로부터 채취된 시료

3.6 FIAS는 언제 어디서든 사전 통보 없이, WADA의 협조 유무와 관계없이 FIAS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금지 또는 자격 정지 선수 포함)에 대한 도핑 검사를 실시할 권리를 보유한다. 회원들은 FIAS의 업무를 지원해야 하며, 특히 FIAS 본부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ADAMS를 활용하여 선정된 선수들을 제시하고 훈련 일정(날짜 및 장소 포함)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7 원칙적으로 검사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실시되어야 하나, 야간 검사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수는 FIAS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 검체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된다. 이는 해당 선수가 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기준이 상기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따라서 선수는 해당 검사가 FIAS 검사 배분 계획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실시되지 않았거나, 선수 본인이 검사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기타 이유로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시료 채취를 거부할 수 없다.

3.8 예외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검사는 사전 통보 없는 검사(No Advance Notice Testing)로 실시되어야 한다. FIAS는 선수 선정 결정이 해당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만 사전에 공개되도록 보장할 것이다.

제 4 조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 FIAS 검사 대상자 풀 및 소재지 신고

- 4.1 선수 - 이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남녀 선수는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 또는 FIAS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인해 자격 정지 기간을 수행 중인 선수 및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상태에서 은퇴한 후 해당 은퇴 기간이 종료되어 스포츠 활동에 복귀하고자 하는 FIAS 선수들도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한다. FIAS는 표적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선수들을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또는 FIAS 검사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FIAS는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또는 FIAS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각 선수에게 직접 또는 해당 국가 연맹을 통해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해당 선수가 지정된 사실, 이 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재지 보고 요건, 그리고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
- 4.2 FIAS 등록 검사 대상자에 포함된 선수 또는 그 대리인(코치, 매니저, 국가연맹)은 선수의 소재 정보 제출을 해당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진 다른 반도핑 기구와 공유하는 데 대한 선수의 동의 확인, 샘플 채취 절차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의 장애 관련 세부 사항 통지, 그리고 ISTI에 명시된 소재 요건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연도 12월 15일,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까지 다음 분기 동안 선수의 정확한 소재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내용에는 다음 분기 매일의 다음 사항을 ADAMS를 통해 식별하여 포함해야 한다: - 선수가 숙박할 장소의 완전한 주소(예: 자택, 임시 숙소, 호텔 등) 다음 분기 동안 매일, 선수가 훈련, 근무 또는 기타 정기 활동(예: 학교)을 수행할 각 장소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그러한 정기 활동의 일반적인 시간대; 다음 분기 동안 선수의 경기 일정, 해당 분기 중 선수가 경기를 치를 예정인 각 장소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해당 장소에서 경기를 치를 예정인 날짜를 포함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출 실패로 간주되며 소재지 보고 실패를 구성한다.
- 4.3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된 선수 또는 그 대리인은 향후 분기 동안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의 특정 60분 시간대를 지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검사에 응할 수 있음을 소재지 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선수의 언제 어디서든 검사에 응할 의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해당 60분 시간대 외의 선수 소재지에 대한 소재지 신고 의무를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선수가 자신의 소재지 신고서에 명시된 당일 지정 60분 시간대에 해당 장소에서 검사에 응할 수 없으며, 해당 60분 시간대 이전에 당일 대체 시간대/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소재지 신고서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이는 신고 불이행에 해당하며 적절한 결과 관리 절차를 거쳐 소재지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후 동일 또는 다른 반도핑 기구가 선수의 소재지 신고서에 명시된 60분 시간대 중 하나에서 해당 선수를 검사하려는 시도가 실패할 경우, 이는 미실시 검사로만 간주될 수 있다.
- 4.4 선수는 자신의 소재지 신고서에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충분히 상세하게

제공하여, 해당 분기 내 어느 날이든 선수의 신고서에 명시된 시간 및 장소에서 검사를 위해 선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수의 책임이다. 해당 일자에 대한 소재지 신고서에 명시된 60분 시간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수는 도핑 통제관(DCO)이 장소를 찾아 접근하고, 해당 장소에서 선수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IAS 반도핑 규정 제2.3조에 따른 샘플 채취 회피 및/또는 (상황에 따라) 제출 불이행으로, 그리고/또는 FIAS 반도핑 규정 제2.5조에 따른 샘플 조작 또는 조작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FIAS는 해당 선수를 대상으로 표적 검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할 것이다. 해당 시간대에 선수가 검사받는 경우, 선수는 60분 시간대를 초과하더라도 시료 채취가 완료될 때까지 DCO와 함께 있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IAS 반도핑 규정 제2.3조(시료 채취 거부 또는 불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 4.5 상황 변화로 인해 소재지 신고서의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경우, 선수는 신고된 정보가 다시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당 분기 내 어느 날이든 60분 시간대의 시간 또는 장소, 그리고/또는 숙박 장소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수는 반드시 소재지 보고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선수는 상황 변경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에 대한 자신의 보고서에 명시된 60분 시간대 이전에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FIAS 반도핑 규정 제2.3조에 따른 제출 불이행 및/또는 (상황에 따라) 시료 채취 회피로, 그리고/또는 FIAS 반도핑 규정 제2.5조에 따른 조작 또는 조작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FIAS는 해당 선수를 대상으로 표적 검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할 것이다.
- 4.6 선수 위치 보고서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선수는, 지정된 일일 60분 시간대 내 위치와 관련되거나, 해당 시간대 외 위치와 관련되거나, 기타 사유에 관계없이, 반도핑 규정 위반(조작 또는 조작 시도)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4.7 선수의 소재지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도,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속한 각 선수는 소재지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항상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선수가 해당 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했고 그 제3자가 적용 가능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 불이행 혐의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 4.8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속한 각 선수는 선수 소재 정보 제출서에 신고된 소재지에서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항상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는 선수가 직접 제출했거나 제3자에게 위임했거나 양자를 병행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해당 기간 동안 소재 정보 제출 책임을 제3자에게 위임했으며, 해당 제3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제출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문제의 날짜에 대한 소재 정보 제출 내용이 최신 상태로 정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검사 불참 혐의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 4.9 FIAS 검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선수는 FIAS 소재지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선수는 검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기 전 및 명단에서 제외될 때 소속 국가 연맹을 통해

통지받아야 한다.

4.10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된 각 선수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FIAS에 제공해야 한다:

- a) 최신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 b) 훈련 소재지(주요 훈련 장소 주소 및 훈련 시간 포함)
- c) 모든 국가대표팀 활동(훈련, 캠프, 경기 등 정확한 일정 및 장소 포함)
- d) 숙박 시설
- e) 검사 전용 60분 시간대

4.11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된 선수는 상기 제4.10조에 명시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관련 마감일(12월 15일, 3월 25일, 6월 25일, 9월 25일)까지 제공해야 한다. FIAS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된 선수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선수는 모든 요건과 결과와 함께 자동으로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된다.

4.12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속한 선수는 FIAS 반도핑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신고 불이행으로 선언될 수 있다:

- 해당 선수가 (i) 등록 검사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음을, (ii) 이에 따른 소재지 신고 의무를, (iii) 해당 의무 불이행 시의 결과를 적절히 통지받았음
- 해당 선수가 적용되는 마감일까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
- (동일 분기 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신고 불이행의 경우) 이전 신고 불이행에 대한 적법한 통지를 받았으며, (해당 신고 불이행으로 인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신고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재지 신고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추가 신고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통지된 기한(통지 수령 후 24시간 이상 경과하고 통지 수령 월 말일까지) 내에 요구된 소재지 신고를 제출(또는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통지에 명시되었음 (또는 업데이트)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기한 내에 해당 제출 불이행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 선수의 불이행이 최소한 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수는 요구 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과실로 위반을 저질렀다고 추정된다. 해당 추정은 선수 본인의 과실 행위가 위반을 초래하거나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만 반박될 수 있다.

4.13 선수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수의 소재 신고서에 명시된 60분 시간대 중 하나에서 선수 검사에 실패한 경우, 해당 선수의 소재 신고서에 명시된 60분 시간대 중 하나에서 FIAS 또는 기타 반도핑 기구가 수행한 후속 검사 시도 실패는 오직 미검사로만 계산된다. (또는, 실패한 시도가 해당 시간대에 선수를 찾기에 제출된 정보가 불충분했기 때문인 경우, 제출 실패로 간주됨)으로만 계산될 수 있다. 단, 해당 후속 시도가 선수가 최초 실패 시도에 대한 정당한 통지를 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4.14 FIAS 반도핑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수가 미실시 검사를 저질렀다고 선언될 수 있다:

- i. 선수가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자신의 소재지

신고서에 명시된 해당 시간대의 지정 장소에서 60분 시간대 동안 검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미검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

- ii. 도핑 검사관이 해당 분기 내 특정 날짜에, 선수의 해당일 소재지 신고서에 명시된 60분 시간대에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선수를 검사하려 시도했음
- iii. 해당 지정된 60분 시간대 동안, DCO가 선수에게 사전 통지 없이도 선수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
- iv. 상기 제4.13조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는 경우) 준수되었음을 입증할 것 그리고
- v. 선수가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60분 시간대에 검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 최소한 과실에 해당함을 입증할 것.

이러한 목적상, 선수는 상기 (i)부터 (iv)까지의 사항이 입증될 경우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해당 추정치는 선수 본인이 다음 사항을 입증함으로써만 반박될 수 있다: (i) 해당 시간대 및 장소에서 검사에 응할 수 없었던 것, (ii) 해당 일자 지정 60분 시간대에 검사에 응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통보하기 위해 최근 소재지 신고서를 업데이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선수 본인의 과실 행위가 원인이 되거나 기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4.15 FIAS 외에도 다른 반도핑 기구가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속한 선수를 검사하고 검사 불이행을 기록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

4.16 FIAS 등록 검사 대상 선수는 12개월 기간 내에 총 3회의 소재지 미이행(신고 미이행 및/또는 미검사를 합산하여 총 3회)을 저지른 경우, 해당 미이행을 선언한 반도핑 기구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4.17 12개월 기간은 선수가 소재지 미이행 위반을 저지른 날부터 시작된다. 해당 12개월 기간 동안 해당 선수에 대해 성공적으로 수행된 시료 채취는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12개월 기간 동안 3회의 소재지 미이행이 발생하면, 해당 12개월 기간 동안 선수로부터 성공적으로 채취된 시료가 있더라도 도핑방지규칙 위반이 성립된다. 그러나, 한 차례 소재 정보 불이행을 한 선수가 첫 번째 불이행 후 12개월 이내에 추가로 두 차례의 소재 정보 불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12개월 기간 종료 시 첫 번째 소재 정보 불이행은 반도핑 규정 위반을 입증하는 목적상 효력을 상실한다.

4.18 ADAMS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확실하게 저장된 소재 정보는 FIAS가 WADA 및 해당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진 기타 반도핑 기관과 공유하며, 이는 오직 도핑 통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엄격한 조건 하에 이루어진다. FIAS는 두 개의 등록 검사 풀에 속한 선수들의 소재 정보 제출을 어느 기관이 수령할 책임이 있는지 국가 도핑 방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FIAS 도핑 방지 관리자는 FIAS를 대리하는 권한 있는 개인, WADA 및 해당 선수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진 다른 도핑 방지 기관이 필요 시에만 소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 FIAS 반도핑 관리자는 또한 소재 정보가 항상 엄격히 기밀로 유지되고, FIAS가 검사 계획 수립, 조정 또는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더 이상 관련성이 없어진 후 관련 기밀 유지 요건에 따라 파기되도록 보장한다.

4.19 FIAS에 의해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선수는, 해당 선수가 FIAS에 은퇴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 포함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아 FIAS로부터 해당 통보를 받을 때까지 위에서 명시된 소재지 보고 요건의 적용을 계속 받는다. FIAS에 은퇴를 통보한 선수는 경기 복귀 예정일 최소 6개월 전에 FIAS에 통보하고, 실제 경기 복귀 전 기간 중 언제든지 예고 없는 경기 외 검사(Out-of-Competition Testing)에 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경기에 복귀할 수 없다.

4.20 선수가 은퇴했다가 다시 스포츠로 복귀하는 경우, 경기 외 검사 대상자로서의 비가용 기간은 12개월 기간 계산 목적상 고려되지 않는다.

제 5 조 FIAS 도핑 검사 체계

5.1 도핑 검사는 현행 ISTI(WADA가 수시로 발표하는 개정, 업데이트 및 수정 사항 포함)와 실질적으로 일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완료된 검사는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ADAMS 정보 교환 시스템에 보고되어야 한다.

5.2 세계 선수권 대회, 월드컵 및 국제 A급 대회에서의 도핑 검사는 FIAS 의료 및 도핑 방지 위원회 또는 FIAS 행정 부서의 구성원인 FIAS 도핑 방지 코디네이터의 감독 하에 또는 그 입회 하에 수행된다.

5.3 경기 외 검사는 FIAS가 승인한 시료 채취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경기 외 도핑 검사는 FIAS 반도핑 규정 및 본 절차에 따른다.

제 6 조 선수 통보

6.1 선수 통보는 시료 채취 기관이 선정된 선수에 대한 통보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되어, 선수가 도핑 검사소에 도착하거나 선수의 불이행 가능성이 검사 기관에 인지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도핑 통제관(DCO), 보호자 및 기타 시료 채취 인원 지정
- 선수 소재 파악 및 선수의 면허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통한 신원 확인. 선수 신원 확인 방법은 도핑 통제 양식에 기록되어야 한다
- 선수가 시료 제공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고 선수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
- 사전 통보 없는 검사의 경우, 통보 시점부터 지정된 도핑 검사 장소 도착까지 선수를 지속적으로 동행 감시 및
- 통보 또는 통보 시도 기록

6.2 선수 통보 전 요구사항

6.2.1 FIAS 반도핑 코디네이터 및 기타 권한 부여된 대리인 및 담당자(DCO)는 도핑 검사가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FIAS는 각 NADO/민간 서비스 제공업체의 DCO를 활용하며, 이들은 해당 기관에서 책임 수행을 위해

훈련받아야 한다. DCO는 시료 채취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한다. DCO는 NADO/민간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발급된 공식 인증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름, 사진 및 신분증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샘플 채취 담당자 및 동반자는 해당 국가도핑방지기관(NADO)으로부터 샘플 채취 과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따라 적절히 훈련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도핑방지기관(NADO)/민간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인증받은 샘플 채취 담당자만이 FIAS를 대신하여 샘플 채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6.2.2 도핑 검사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시료 채취 장소인 도핑 검사소의 점검
- 시료 채취에 필요한 물품의 준비 상태 확인
- 검사 대상 선수 선정 시 FIAS 반도핑 코디네이터와의 협력
- 도핑 검사 대상 선수의 신원 확인
- 샘플 채취, 코딩 및 봉인, 기록 및 포장, 그리고 전체 과정의 발송 또는 감시
- FIAS 반도핑 관리자에게 제출할 보고서 작성
- FIAS가 제공한 임무 명령서에 따라 관리 이력(Chain of Custody) 문서 작성

6.2.3 현지/대회 조직위원회는 도핑 통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 명 이상의 남성 및/또는 여성 보호자(Chaperone)를 임명해야 한다. 동행자는 동행하는 선수와 동일 성별이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한다.

6.2.4 조직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는 안전한 도핑 검사소를 설치해야 한다:

- 도핑 검사실 (테이블, 의자, 세면대)
- 통합 화장실 및
- 선수 및 관련 대표자를 위한 대기실

6.2.5 도핑 검사소는 경기장 근처에 위치해야 하며, 도핑 검사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명시된 FIAS 의료 규정에 따라 외부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의료 대표단, 대리인 및 권한 부여된 인원에게 대한 적절한 교통편은 대회 전, 중, 후 및 기타 필요 시 조직위원회가 제공해야 한다.

6.2.6 다음 인원만 도핑 검사소 출입이 허용된다:

- i. FIAS 반도핑 코디네이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및 인원, FIAS 기술 대표/국가 기술 관찰자 및 지정 보조원, 그리고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국제 관찰자
- ii. 도핑 검사를 받을 선수와 그 관련 대리인 및/또는 통역사, 미성년 선수의 대리인, 그리고 장애 선수의 대리인
- iii. 독립 관찰자 프로그램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WADA 관찰자

6.3 선수 통보 요건

6.3.1 선수는 시료 채취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최초로 통보받는 자여야 한다. 단,

아래 명시된 바와 같이 제3자와의 사전 접촉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3.2 DCO 또는 보호자(해당되는 경우)는 선수가 미성년자인 경우, 선수의 장애로 인해 필요한 경우, 또는 통역사가 필요하고 통역사가 통보에 동석 가능한 상황에서 선수 통보 전에 제3자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6.3.3 최초 접촉 시, 해당 DCO 또는 보호자는 선수 및/또는 제3자(필요한 경우)에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 선수가 시료 채취를 받아야 함
- 시료 채취가 시행되는 권한
- 시료 채취 유형 및 시료 채취 전 준수해야 할 조건
- 선수의 권리, 특히 다음 권리를 포함
 - i. 대리인 및 가능할 경우 통역사의 동행을 요청할 권리
 - ii. 시료 채취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권리
 - iii. 정당한 사유로 도핑 검사소 출두 지연을 요청할 권리 및
 - iv. 장애가 있는 선수의 경우 조정 요청 권리
- 선수의 책임 사항, 다음을 포함하여:
 - i. 도핑 통제관/동행자가 최초 접촉한 시점부터 시료 채취 절차 완료 시까지 항상 도핑 통제관/동행자의 직접 관찰 범위 내에 머무를 것
 - ii. 신분증을 제시할 것
 - iii. 시료 채취 절차 준수 (선수에게 불이행 시 발생 가능한 결과에 대해 안내해야 함) 및
 - iv. 본 규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료 채취를 위해 출석할 것
- 도핑 검사소의 위치
- 선수가 시료 제공 전 음식물 또는 음료를 섭취하기로 선택할 경우, 이는 선수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짐
- 과도한 수분 섭취를 하지 말 것(이는 적절한 검체 생산을 지연시킬 수 있음) 및
- 선수의 검체 채취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소변 검체는 통보 후 선수가 배출한 첫 번째 소변이어야 함, 즉 검체 채취 담당자에게 검체를 제공하기 전에 샤워 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변을 배출해서는 안 됨

제 7 조 **검체 채취 세션 준비**

7.1 소변 검사

7.1.1 FIAS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시료 채취 장비 시스템만을 사용한다: 모든 병, 용기, 튜브 또는 시료 밀봉에 사용되는 기타 품목에 고유

번호 체계가 통합되어 있어야 하며, 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밀봉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장비 자체에서 선수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선수 사용 전 모든 장비가 청결하고 밀봉된 상태여야 한다. FIAS는 증거물 관리 체인(Chain of Custody) 기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7.2 소변 검사 대상 선수 선정 및 인원

7.2.1 원칙적으로, 상위 성적 선수들과 추첨 또는 표적 검사(Target Tested)를 통해 선정된 일정 수의 여성 및/또는 남성 선수가 소변 검사를 받게 된다. 추첨은 FIAS 의료 대표가 해당 종목의 최종 블록 전에 진행한다. FIAS는 타 선수 표적 검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원칙 및 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7.2.2 WADA는 FIAS 선수들을 대상으로 자체 비용으로 경기 외 도핑 검사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7.2.3 검사 대상 선수의 이름은 경기 종료 후 본인에게 직접 통보된다. 초기 접촉 시 도핑 통제관(DCO)은 선수에게 권리와 의무, 도핑 통제소 위치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선수는 대리인(동행 관계자) 및 통역 동행, 시료 채취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 정당한 사유로 도핑 통제소 출석 지연 요청, 장애 선수의 경우 절차 변경 요청 등의 권리를 가진다. 선수에게는 DCO의 대면 통보 시작 시점부터 시료 채취 절차 완료 시까지 항상 DCO 및 보호자의 시야 내에 머물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요청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시료 채취 절차에 협조하며, 지연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검사에 응해야 한다. 도핑 검사관은 선수가 시료 제공 전 음식물 또는 음료를 섭취하기로 선택할 경우, 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진행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과도한 수분 보충을 피해야 함을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공된 시료는 통보 후 선수가 배출한 첫 번째 소변이어야 한다.

7.3 도핑 검사소에서의 준비

7.3.1 도핑 검사 중 소변 샘플 제공 대상으로 선정된 선수는 경기 종료 직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핑 검사소에 출석해야 한다. 도핑 검사 담당자의 호송이 선수와 항상 동행한다. 선수는 소속 팀 관계자 및 통역사의 동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7.3.2 도핑 통제관(DCO) 또는 동행자 중 한 명이 도핑 통제 기록서를 2부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선수의 성명, 소속 국가, 요청 시간 및 도핑 통제소 도착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수는 지난 7일 동안 복용한 모든 약물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양식의 한 부분은 선수의 서명으로 확인된 적절한 통지를 증명한다. 선수가 도핑 검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인정하는 도핑 검사 양식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통지를 회피하거나, 통지 후 도핑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는 가능한 경우 선수에게 거부 또는 불이행의 결과를 알리고, 보호자는

즉시 모든 관련 사실을 DCO에게 보고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도핑 통제관은 선수에게 통지하려 시도해야 하며, 선수의 행동을 해당 선수의 팀 관계자에게 알릴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시료 채취를 계속 진행해야 하며, 사실과 상황을 상세한 보고서로 FIAS에 기록해야 한다.

7.3.3 도핑통제관/동행자는 통지 확인 및 수락 후, 선수의 도핑통제소 보고 지연 허가 요청 또는 도착 후 일시적 퇴실 요청 등 합리적인 제3자 요구사항을 재량에 따라 고려할 수 있으며, 지연 기간 동안 선수를 지속적으로 동행 관찰하고 직접 감시할 수 있고 해당 요청이 다음 활동과 관련된 경우 그러한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경기 중 검사 시

- i. 시상식 참여
- ii. 미디어 약속 이행
- iii. 추가 경기 참가
- iv. 쿨다운 수행
- v. 필요한 의료 치료 받기
- vi. 대리인 및/또는 통역사 찾기
- vii. 사진 신분증 취득
- viii. 기타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해당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함)

경기 외 검사 시

- i. 대리인 찾기
- ii. 훈련 세션 완료
- iii. 필요한 의료 처치 받기
- iv. 사진 신분증 취득
- v. 기타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 상황(해당 사항은 문서화되어야 함)

7.3.4 도핑 통제관(DCO)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는 도핑 통제소(DCS)에 보고 지연 사유 및/또는 도핑 통제소 이탈 사유 중 FIAS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을 문서화해야 한다. 선수가 지속적인 관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역시 기록해야 한다.

7.3.5 미성년 선수는 시료 채취 절차 전체에 걸쳐 대리인이 동행할 수 있다. 이는 대회 주최자가 미성년 참가 선수에 대한 검사에 필요한 부모 동의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성년 선수에 대한 통보 및 시료 채취의 모든 측면은 선수의 미성년자 신분으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표준 통보 및 시료 채취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시료 채취를 계획하거나 준비할 때, 시료 채취 기관(SCA)과 도핑 통제관(DCO)은 미성년 선수에 대한 시료 채취 시 표준 통보 또는 시료 채취 절차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도핑 통제관(DCO)과 시료 채취 기관은 가능한 경우 상황에 따라

수정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수정이 시료의 신원, 보안 또는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성년 선수는 성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통지받아야 하며, 시료 채취 세션 전체에 걸쳐 대리인의 동행을 선택할 수 있다. 대표자는 미성년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소변 샘플 배출 과정을 목격해서는 안 된다. 이는 DCO가 샘플 제공 과정을 정확히 관찰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가 대표자 동행을 거부하더라도, 해당 샘플 채취 기관, DCO 또는 보호자(해당되는 경우)는 선수에게 통보하거나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제3자가 동석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DCO는 미성년자인 선수로부터 시료를 채취하는 동안 (시료 채취 인원 외에) 누가 입실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즉, 미성년자의 대리인이 시료 채취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미성년자가 소변 시료를 배출할 때 DCO를 관찰하는 것은 포함되나, 미성년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소변 배출 과정을 직접 관찰하는 것은 제외됨), DCO/ 보호자 동반자 대표가 미성년자가 소변 샘플을 배출할 때 DCO/보호자 동반자를 관찰할 수 있으나, 대표자가 직접 샘플 배출을 관찰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요청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선수가 샘플 채취 과정 중 대표자 동석을 거부할 경우, DCO는 이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한다. 이는 검사의 무효화를 의미하지 않으나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미성년자가 대리인 동석을 거부할 경우, DCO/동행자의 대리인이 반드시 동석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경기 외 검사 장소는 성인의 존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예: 훈련장)가 바람직하다. 미성년자 선수 검사 시 성인이 동석하지 않을 경우, 검체 채취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선수가 대리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7.3.6 지적, 신체적 또는 감각적 장애가 있는 선수는 선수 본인의 동의와 DCO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체 채취 과정에서 선수 대리인 또는 도핑 통제소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핑 통제관은 필요 시 대체 시료 채취 장비 또는 시설 사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시료의 신원, 보안 및 무결성이 영향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소변 채취 또는 배액 시스템을 사용하는 선수는 분석을 위한 소변 시료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시스템에 남아 있는 기존 소변을 배출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기존 소변 채취 또는 배액 시스템을 새롭고 사용되지 않은 카테터 또는 배액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한다. 카테터 또는 배액 시스템은 시료 채취 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시료 채취 장비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며, 해당 목적을 위한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다. 시료 채취 기관은 가능한 경우, 장애가 있는 선수와의 시료 채취 세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시료 채취 장비를 DCO가 확보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장애가 있는 선수에 대한 통보 및 시료 채취의 모든 측면은 선수의 장애로 인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료 채취 장비 및 시설을 포함한 표준 통보 및 시료 채취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DCO는 장애가 있는 선수에 대한 표준

시료 채취 절차에 적용된 수정 사항(상기 조치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수정 사항 포함)을 기록해야 한다.

7.3.7 선수와 동반자는 선수가 상담실로 호출될 때까지 도핑 검사소의 대기실에서 감독 하에 대기해야 한다. 선수 및 동반자가 지참한 개인 소지품(의류, 가방 등)은 도핑 검사소 출입 시 조작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될 수 있다. 선수 감시 중 도핑 검사소 직원 또는 보호자가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관찰한 경우, 해당 상황은 DCO에게 보고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DCO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DCO는 준수 불이행 가능성을 조사하고/또는 선수로부터 추가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려해야 한다.

7.3.8 준수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경우, FIAS 반도핑 관리자는 WADA에 통보하고 모든 관련 정보 및 문서를 바탕으로 FIAS 반도핑 청문 패널의 조사를 개시하며, 선수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답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 과정은 문서화된다. 최종 결정은 WADA 및 해당 반도핑 기구에 제공된다.

7.3.9 선수는 도핑 통제관(DCO)의 승인을 받고, 도핑 통제관(Chaperone)의 지속적인 관찰 하에 있을 때에만 도핑 통제를 떠날 수 있다. 도핑 통제관(DCO)은 선수가 검체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선수의 합리적인 요청을 고려해야 한다. 도핑 통제관(DCO)이 승인을 할 경우, 도핑 통제관(DCO)은 선수와 다음의 외출 조건에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 선수가 도핑 통제를 떠나는 목적;
- 복귀 시간
- 항상 관찰을 받음
- 선수는 도핑 검사소로 복귀할 때까지 소변을 배출하지 않음

7.3.10 도핑 검사 절차 중 도핑 검사소 내에서는 사진 촬영, 동영상 또는 녹음 행위가 금지된다.

7.3.11 DCO는 선수에게 수분 보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선수는 분석에 적합한 비중을 가진 검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수분 보충을 피해야 한다.

7.4 혈액 및 유전자 검사

7.4.1 선수의 혈액 검사는 혈액 샘플 내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Athlete Biological Passport) 매개변수 값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또한 성장 호르몬, 에리스로포이에틴 유사 물질(ESA) 또는 유전자/세포 도핑(즉, 운동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유전적 요소 및/또는 세포의 비치료적 사용) 여부를 검출하기 위한 검사도 실시된다. 이러한 모든 도핑 검사에서 선수와 시료 채취 담당자의 건강 및 안전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며, 시료가 관련 분석 지침을 충족하는 품질과 양을 갖추고, 시료가 조작, 대체, 오염 또는 기타 방식으로 변조되지 않았으며, 시료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식별되고, 시료가

안전하게 밀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7.4.2 도핑 통제관(DCO)은 각 검체가 적절히 채취, 식별 및 봉인되었으며, 모든 검체가 관련 분석 지침에 따라 적절히 보관 및 발송되었음을 확인하는 책임이 있다. 혈액 채취 담당관은 혈액 검체를 채취하고, 검체 제공 중 관련 질문에 답변하며, 검체 채취 세션 완료에 필요하지 않은 사용된 혈액 채취 장비를 현지 혈액 취급 기준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의무가 있다.

7.4.3 혈액 샘플 채취 장비는 혈액 프로파일링을 위한 단일 샘플 튜브 또는 혈액 분석을 위한 A 및 B 샘플 튜브로 구성되거나, 관련 실험실에서 달리 지정하는 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7.5 혈액 검사 대상 선수 선정

7.5.1 원칙적으로 일정 수의 선수가 혈액 검사를 받도록 선정될 수 있다. 혈액 검사는 선정된 대회에서 또는 FIAS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 및/또는 FIAS 반도핑 코디네이터가 결정한 경우에 실시된다.

7.5.2 모든 혈액 샘플은 FIAS 또는 기타 DCO가 지정한 자격을 갖춘 인원(혈액 채취 담당관)에 의해서만 채취되어야 한다. 샘플 채취 인원은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하며, 혈액 채취 담당관은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자격과 실무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채취 세션에서 샘플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의 샘플 채취 또는 검사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샘플 채취 인원은 해당 샘플 채취 세션에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사가 진행되는 종목의 계획 수립에 관여하거나, 해당 세션에서 샘플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와 친족 관계이거나 개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혈액 채취 담당자는 최소한 검사 과정의 모든 관련 요건에 대한 학습과 의료 환경에서의 관련 표준 예방 조치 숙지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에서 적절히 훈련받아야 한다. 이후 FIAS로부터 최대 2년간 인증을 받으며, 재인증 전 1년 이내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재인증이 가능하다. 국가도핑방지기구(NADO) 또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인증한 혈액 채취 담당자만이 FIAS를 대신하여 샘플 채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7.5.3 모든 선수는 언제든지 혈액 검사에 선정될 수 있다.

7.5.4 선정된 선수는 상기 담당자로부터 통보를 받으며, 샘플 채취 시간을 포함한 확인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7.6 경기 외 검사

7.6.1 경기 외 도핑 검사는 FIAS 행사 중 및 행사장에서 실시되는 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FIAS 행사에서의 경기 외 검사는 경기 시작 12시간 전까지 종료되며, 경기 종료 후 최소 1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7.6.2 FIAS 도핑 방지 코디네이터는 검사 대상 선수를 선정 후 도핑 검사 장소와 시간을 결정한다. WADA는 FIAS와 합의한 바에 따라 선수 선정 권한을

부여받는다. 검사 계획 수립 시 최신 APMU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

7.6.3 도핑 통제관(DCO)은 본인 신분증과 임명장을 제시해야 한다.

7.6.4 미성년 선수가 FIAS 등록 검사 대상자 풀에 포함된 경우, 모든 경기 외 검사 장소는 성인의 동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예: 훈련장)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검사는 ISTI 부속서 C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제 8 조 샘플 채취 절차 수행

8.1 소변 검사

8.1.1 검사실에는 한 번에 한 명의 선수만 호출되어야 한다.

8.1.2 선수는 채취 용기를 선택해야 하며, 해당 용기가 비어 있고 깨끗한지, 선택한 용기의 모든 밀봉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용기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선정 가능한 깨끗한 용기는 충분한 수량(검사 대상 선수 수보다 최소 1개 이상)이 준비되어야 한다. 선수가 선택한 용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용기를 선택할 수 있다. 선수가 선정 가능한 용기 중 어느 것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 DCO가 이를 기록해야 한다. 선정 가능한 모든 채취 용기가 불만족스럽다는 선수의 의견에 DCO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DCO는 선수에게 샘플 채취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선수의 주장대로 선정 가능한 모든 채취 용기가 불만족스럽다는 DCO의 동의 시, DCO는 선수의 소변 샘플 채취를 중단해야 하며 이를 기록해야 한다.

8.1.3 선수는 허리 아래부터 무릎까지 노출된 상태에서, 본인이 선택한 용기에 사적인 공간에서 소변을 배출해야 하며, 이때 선수와 동성인 감독관의 밀접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DCO/감독관은 가능한 경우, 선수가 시료 제공 전에 손을 철저히 씻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시료 제공 후, DCO는 선수의 배뇨 시 추가적으로 배출된 소변이 채취 용기에 담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8.1.4 채취된 소변 시료는 최소 90ml 이상이어야 한다. 선수는 소변이 담긴 채취 용기를 가지고 통제실로 돌아와야 하며, 시료가 밀봉될 때까지 채취 용기와 제공된 시료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DCO 또는 동반자는 선수의 신체에서 샘플이 배출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8.1.5 DCO는 선수의 시야 내에서 해당 실험실의 규정을 사용하여 소변 샘플의 양이 실험실의 분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선수가 충분한 양의 소변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부분 샘플은 용기에 담아 밀봉해야 한다. DCO는 선수의 시야 내에서 용기가 적절히 밀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DCO와 선수는 장비 코드 번호 및 불충분한 샘플의 양과 신원이 DCO에 의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밀봉된 부분 샘플은 선수 또는 DCO가 관리해야 한다. 선수는 추가 소변이 제공되고 샘플 채취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받아야 하며, 수분 보충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요청된 90ml의 소변량이

제공된 경우, DCO는 선수에게 봉인을 해제하고 시료를 합치도록 지시해야 하며, 최소 90ml의 소변량이 충족될 때까지 추가 시료를 최초 채취된 전체 시료에 순차적으로 첨가해야 한다.

- 8.1.6 DCO는 선수에게 두 병(A 및 B 시료용)이 포함된 시료 채취 키트를 선택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시료 채취 키트를 선택한 후, DCO와 선수는 모든 코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DCO가 이 코드 번호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선수 또는 DCO가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DCO는 선수에게 위 절차에 따라 다른 키트를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선수 본인이 소변을 병에 직접 부어야 한다. 즉, 먼저 최소 30ml의 소변을 B 병에 부은 후, 가능한 한 A 병을 채운다(최소 60ml 이상, 장비 제조업체 권장 용량까지). 이후 선수는 장비 제조업체의 권고에 따라 잔여 소변으로 B 병을 채운다. DCO가 잔여 소변의 분석 적합 비중을 검사할 수 있도록 채취 용기에 소량의 소변을 남겨둬야 한다. A 병과 B 병이 앞서 설명한 대로 모두 채워진 후에만 소변을 폐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선수는 DCO의 지시에 따라 용기를 밀봉해야 한다. DCO는 선수의 시야 내에서 용기가 적절히 밀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각 A 및 B 용기는 시료 밀봉 직후 즉시 밀봉될 용기에 넣어진다.
- 8.1.7 채취 용기에 남은 잔여 소변량을 사용하여, DCO는 ISTI 규정에 따라 분석에 적합한 비중을 측정해야 한다. 이 분석에 적합한 비중은 도핑 검사 양식에 기록된다. DCO의 현장 측정 결과 시료가 분석에 적합한 비중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DCO는 선수에게 추가 시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는 요구되는 분석에 적합한 비중이 충족될 때까지 또는 DCO가 물류상의 이유로 시료 채취 세션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까지 지속된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DCO가 적절히 문서화해야 한다. 선수에게는 과도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이는 적합한 시료 생산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상황에서 과도한 수분 섭취는 규정 제2.5조(도핑 통제의 어느 부분에 대한 조작 또는 조작 시도)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추가 시료 제공을 기다리는 동안 선수는 지속적인 관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도핑 통제관은 채취된 시료가 동일 선수에게서 나온 것임을 기록하고 시료 제공 순서를 기록해야 한다. 선수의 시료 중 어느 것도 분석에 적합한 비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고, 도핑 통제관이 운영상의 이유로 시료 채취 절차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도핑 통제관은 시료 채취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경우 FIAS 반도핑 청문회 위원회 위원장은 가능한 반도핑 규정 위반을 조사할 수 있다. DCO는 분석에 적합한 비중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집된 모든 샘플을 분석을 위해 실험실로 보내야 한다. 실험실은 FIAS와 협의하여 분석할 샘플을 결정해야 한다.

- 8.1.8 선수 및/또는 선수 관련자의 행동 또는 시료 채취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은 DCO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시료의 출처나 진위 여부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선수에게 추가 시료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이상 징후가 있거나 선수가 추가 시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DCO는 해당 사안을 평가하여 준수 실패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DCO는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지식이 보고되고 가능한 증거로 제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준수 불이행 가능성을 보고하기 위한 적절한 문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또는 실행 가능한 시점에 관련 정보(해당되는 경우 현장 주변 정보 포함)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 샘플 채취 담당자는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DCO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DCO는 해당 사안을 FIAS 반도핑 관리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선수에게는 가능한 결과와 FIAS가 준수 실패 가능성을 조사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지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선수의 샘플 채취 세션을 완료해야 한다.
- 8.1.9 시료 채취 세션 수행 시 최소한 다음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통보 날짜, 시간 및 유형(사전 통보 없음, 사전 통보, 경기 중 또는 경기 외); 도핑 검사소 도착 시간; 시료 제공 날짜 및 시간; 선수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선수 거주지 주소 및 전화번호; 선수 종목 및 세부 종목; 선수 코치 및 주치의 이름; 샘플 코드 번호; 샘플 유형(소변, 혈액 등) 및 검사 유형(경기 중 또는 경기 외); 소변 샘플 채취를 입회한 입회인의 성명 및 서명; 해당되는 경우 및 아래 명시된 바에 따라 혈액 샘플을 채취한 혈액 채취 담당관의 성명 및 서명; 샘플에 대한 필수 실험실 정보; 부분 샘플 정보; 선수 본인이 신고한 지난 7일 이내 복용한 약물 및 보조제, 그리고 (채취된 샘플이 혈액 샘플인 경우) 지난 3개월 이내의 수혈 내역; 샘플 채취 데이터 처리에 대한 선수 동의; 연구 목적의 시료 사용에 대한 선수 동의 또는 거부; 제공된 경우, 해당 절차 수행에 관한 선수 의견 또는 우려 사항; 선수의 성명 및 서명; 필요한 경우 선수 대리인의 성명 및 서명; DCO의 성명 및 서명; 검사 기관의 명칭; 시료 채취 기관의 명칭; 결과 관리 기관의 명칭.
- 8.1.10 선수, 선수 대리인, DCO, 해당되는 경우 미성년자 대리인 및 증인으로 참석한 공식 역할의 기타 인원은 원할 경우 기록에 서명함으로써 시료 채취 세션이 올바르게 수행되었으며 선수의 우려 사항을 포함한 모든 세부 사항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한다. 도핑 통제관은 선수에게 시료 채취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한 우려 사항을 문서화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선수 시료 채취 절차 중 공식적 역할을 수행한 다른 참석자들도 절차 증인으로 해당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기록 사본은 각각 별도의 봉투에 넣어 밀봉해야 하며, 그중 한 부는 선수에게 교부해야 한다.
- 8.1.11 기록 원본이 포함된 봉투는 시료 채취 절차 완료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FIAS 반도핑 코디네이터에게 인계되어야 한다. 경기 외 검사 시, 시료 채취 기관은

가능한 경우 ADAMS에 세부 사항을 입력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DC 양식 및 관련 서류를 즉시 스캔하여 FIAS 반도핑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해야 한다. 사본이 들어 있는 봉투는 WADA 인증 실험실로 또는 WADA가 승인한 다른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8.1.12택배사는 시료 채취 세션 완료 후 가능한 한 빨리 용기를 WADA 인증 실험실로 분석을 위해 전달한다. 시료는 시간 지연 및 극심한 온도 변화와 같은 요인으로 인한 시료 열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선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시료 또는 실험실로 발송되는 서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시료 수령은 실험실 책임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8.1.13시료 및 관련 서류 또는 시료 채취 세션 서류의 수령이 예정된 목적지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운송 중 시료의 무결성 또는 신원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FIAS 도핑 심사 위원회 위원장이 관리 체인(Chain of Custody)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FIAS 도핑 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시료를 무효화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시료가 무효화된 경우, 이를 문서화하여 WADA에 보고한다. 후속 대상 검사가 실시된다.

8.1.14시료 채취 세션 및/또는 반도핑 규정 위반과 관련된 문서는 FIAS에서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8.1.15FIAS가 시작한 검사에서 채취된 시료는 FIAS의 소유이다.

8.2 혈액 검사

8.2.1 아래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제8.1조의 규정은 혈액 검사에도 적용된다. 해당 검체가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APB 기술 문서가 적용되며, DCO/BCO는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프로그램 전용 도핑 검사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양식이 없는 경우, DCO/BCO는 일반 도핑 검사 양식을 사용하되, 선수와 DCO/BCO가 서명하는 보충 보고서 양식에 다음 추가 정보를 수집 및 기록해야 한다:

- i. 시료 채취 전 2시간 이내에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참가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사항
- ii. 선수의 지난 2주간 고도 1500미터 이상 지역에서의 훈련, 경기 또는 거주 여부. 해당 사항이 있거나 불확실한 경우, 선수의 체류 장소명 및 위치, 체류 기간, 해당 지역의 추정 고도(알려진 경우)를 기록해야 함
- iii. 선수가 지난 2주 동안 고도 시뮬레이션 장치(저산소 텐트, 마스크 등)를 사용했는지 여부. 해당 시 장치 유형 및 사용 방식(빈도, 기간, 강도 등)에 관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록해야 함 그리고
- iv. 선수가 지난 3개월 동안 수혈을 받았는지 여부. 지난 3개월 동안 사고, 질병 또는 헌혈로 인한 출혈이 있었는지 여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예상

출혈량을 명시해야 함

- 8.2.2 지정된 시간에 선정된 선수는 샘플 채취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여 선수가 예정된 시간에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샘플 채취 시간을 해당 선수의 경기 시작 5분 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
- 8.2.3 선수가 혈액 샘플 채취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 거부 시 발생 가능한 결과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선수가 계속 거부할 경우, 이 사실은 기록에 기재되고 담당관이 서명한다. 선수와 동반자 역시 서명해야 한다. 담당관은 해당 거부 사실을 FIAS 반도핑 코디네이터에게 통보할 책임이 있다.
- 8.2.4 DCO는 선수에게 시료 제공 전 최소 10분간 편안한 자세를 포함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DCO는 선수에게 시료 채취에 필요한 시료 채취 키트를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선택된 장비가 조작되지 않았으며 봉인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8.2.5 혈액 채취 담당관은 선수 또는 선수의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부위에서 멸균 소독 솜 또는 면봉으로 피부를 소독하고, 필요한 경우 지혈대를 적용해야 한다. 혈액 채취 담당관은 선정된 선수의 비주도 팔 표면 전완 정맥에서 최종 채취 용기에, 수행될 시료 분석의 관련 분석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정맥혈을 채취해야 한다. 지혈대를 적용한 경우, 정맥 천자 후 즉시 제거해야 한다.
- 8.2.6 세 번의 시도 내 혈액 샘플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 혈액 채취 담당관은 DCO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DCO는 혈액 샘플 채취를 중단하고 중단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 8.2.7 혈액 채취 담당관은 채혈 부위에 드레싱을 적용하고, 샘플 채취 세션 완료에 필요하지 않은 사용된 혈액 채취 장비는 혈액 취급에 관한 현지 기준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해당 샘플이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될 경우, 선수의 훈련 또는 경기 시작 2시간 이내에는 채취해서는 안 된다. 선수에게 샘플 채취 대상자 선정 통보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훈련 또는 경기를 수행한 경우, DCO/BCO/동행자는 2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선수를 지속적으로 감시한 후 샘플을 채취해야 한다. 운동의 성격(경기, 훈련 등)과 지속 시간 및 일반적인 강도는 DCO/BCO가 임무 문서에 기록해야 한다.
- 8.2.8 선수는 튜브를 세 번 가볍게 흔든 후 DCO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검체를 검체 채취 키트에 밀봉해야 한다. 선수의 시야 내에서 DCO는 밀봉 상태가 양호한지 확인해야 한다. 혈액이 튜브로 유입된 후 추가 현장 처리(예: 원심분리 또는 혈청 분리,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프로그램 관련 시료의 경우)가 필요한 경우, BCO는 튜브의 혈류가 멈춘 후 튜브를 홀더에서 꺼내 튜브를 최소 세 번 이상 부드럽게 뒤집어 혈액을 균질화해야 한다. 선수는 시료가 안전하고 변조 방지 기능이 있는 키트에 최종 밀봉될 때까지 관찰을 위해 현장에 머물러야 한다.

- 8.2.9 다른 선수들이 시료 채취를 기다리는 경우, 예상된 채취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도핑 검사소에 지연 도착한 선수는 목록의 맨 끝으로 이동된다.
- 8.2.10 봉인된 검체는 도핑 통제소에서 분석하거나 WADA 공인 실험실로 분석을 위해 발송하기 전, 또는 WADA가 달리 승인한 방식에 따라 검체의 무결성, 신원 및 보안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해당 검체가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사용될 예정인 경우, 도핑 통제관/생물학적 통제관은 보관 및 운송 기간 동안 혈액 검체를 냉각 온도로 유지할 수 있으나 전혈 검체가 얼지 않도록 하는 저장 장치(예: 냉장고, 보온 쿨박스, 보온 가방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의 기타 장치)에 보관해야 한다. 보관 및 운송 중 시료의 온도를 기록하기 위해 온도 데이터 로거를 사용해야 한다. 보관 장치를 선택할 때, 시료 채취 기관은 보관 및 운송 기간, 함께 보관될 시료의 수, 그리고 주된 환경 조건(더운 온도 또는 추운 온도)을 고려해야 한다.
- 8.2.11 시료가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될 예정인 경우, 시료 채취 후 35 시간 이내에 분석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실험실로 운송해야 한다.

제 9 조 도핑 검사 실험실

- 9.1 FIAS 도핑 검사에서 채취된 시료는 WADA가 인증하거나 WADA가 승인하고 FIAS가 선정한 실험실만 분석할 수 있다. 해당 실험실 목록은 WADA가 지속적으로 공표 및 갱신한다. 이 실험실들은 현행 국제 실험실 기준(WADA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음)에 따라 시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 9.2 샘플은 현행 WADA 금지 목록에 명시된 금지 물질 및 금지 방법, 그리고 코드 제4조 5항에 규정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WADA가 지시할 수 있는 기타 물질의 검출을 목적으로 채취 및 분석된다. 또는 FIAS 또는 기타 반도핑 기구가 선수의 소변, 혈액 또는 기타 매트릭스에서 관련 매개변수를 프로파일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또는 기타 매트릭스(혈액, DNA 프로파일링 또는 게놈 프로파일링 포함)에서 도핑 방지 목적으로 분석한다. 선수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 외에 시료를 사용할 수 없다. 본 조항에서 언급된 목적 외에 사용되는 시료는 특정 선수로 추적될 수 없도록 식별 코드를 제거해야 한다.
- 9.3 FIAS 권한 하에 채취된 검체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10년 이내에 FIAS 또는 WADA의 지시에 따라 상기 목적을 위한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체의 추가 분석에 관한 상황 및 조건은 국제 실험실 기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료 분석: 결과 판정

10.1 소변 시료 분석

- 10.1.1 분석 과정 중 실험실 책임자와 그 직원에만 실험실 출입이 허용된다.

10.1.2 소변 시료는 WADA 스포츠별 분석 기술 문서에 따른 최소 분석 수준으로 분석된다.

10.1.3 실험실 분석 결과는 기밀로 처리되어야 한다. 해당 결과는 ADAMS에 보고되거나, FIAS 반도핑 관리자(anti-doping@sambo-fias.com 공식 이메일 주소)에게만 이 목적을 위해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10.2 혈액 샘플 분석

10.2.1 보안 시스템으로 채취 및 밀봉된 혈액 샘플은 용혈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운송되어야 하며, FIAS 반도핑 관리자가 선정한 WADA 인증 실험실로 이송되어야 한다. 해당 샘플은 WADA 스포츠별 분석 기술 문서 및 국제 실험실 표준에 따라 분석되어야 한다.

10.2.2 WADA 인증 또는 WADA 승인 실험실에서 수행된 ABP 분석 결과는 ADAMS에 즉시 보고되거나, 본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FIAS 반도핑 관리자에게만 공식 이메일 주소(anti-doping@sambo-fias.com)를 통해 전달되어야 한다.

제 11 조 선수에 대한 일반 의료 관리 및 치료용 면제(TUEs)

11.1 모든 FIAS 선수는 소속 의료진 또는 국가 연맹 소속 의사에 의한 신체 검진을 받아야 한다. 선수의 건강 상태 및 이후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한 기록은 각 FIAS 회원 연맹에 보관되어야 한다. 훈련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회원 기관에 보관된 의료 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최신 의료 평가가 필요하다.

11.2 질병은 질병/부상 추세를 사후 평가하기 위해 기록된다. 모든 FIAS 회원 연맹은 이러한 부상 기록을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FIAS 반도핑 관리자를 통해 국가 연맹으로부터 해당 기록을 공식 요청할 수 있다. 선수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선수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당 정보는 스포츠 및 참가자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선수나 단체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11.3 치료용 면제 국제 기준 제4.2조에 따라, 선수는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우세성 판단 기준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경우(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TUE를 부여받을 수 있다:

- a) 해당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이 관련 임상 증거로 뒷받침되는 진단된 의학적 상태의 치료에 필요함
- b)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치료적 사용이 의학적 상태 치료 후 선수의 정상 건강 상태 회복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가능성의 균형 기준)
- c) 금지된 물질 또는 금지된 방법이 해당 의학적 상태에 대한 지시된 치료법이며, 합리적으로 허용된 치료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d) 금지된 물질 또는 금지된 방법의 사용 필요성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해당

사용 당시 금지되었던 물질 또는 방법의 (TUE 없이) 이전 사용의 결과여서는 안 된다

11.4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가 문서화된 모든 FIAS 선수는 먼저 FIAS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가 부여하는 치료용 면제(TUE)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TUE는 FIAS 웹사이트에 게시된 FIAS 일정표에 명시된 모든 FIAS 대회 참가에 필요하다.

11.5 선수는 다음의 경우에만 금지 물질의 치료적 사용에 대한 소급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a) 의학적 상태에 대한 응급 또는 긴급 치료가 필요했던 경우
- b) 시료 채취 전에 TUE 신청서를 제출할(또는 TUEC가 검토할) 시간, 기회 또는 기타 예외적 상황이 부족했던 경우
- c) 특정 종목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 설정으로 인해 선수의 국가 반도핑 기구가 선행적 TUE 신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은 경우
- d) 반도핑 기구가 국제 수준 선수 또는 국가 수준 선수가 아닌 선수로부터 샘플을 채취하기로 선택한 경우, 해당 선수가 치료 목적으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을 사용한 경우, 반도핑 기구는 해당 선수가 소급 적용 TUE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또는
- e) 선수가 경기 외에서 치료 목적으로 경기 중에만 금지된 금지 물질을 사용한 경우

11.6 FIAS는 각 국가 연맹에 현재 WADA 국제 치료용 면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각 국가 연맹은 현재 국제 치료용 면제 기준이 회원들에게 제공되고 관할권 내 모든 비-FIAS 선수에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FIAS가 승인한 모든 TUE는 FIAS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ADAMS를 통해 해당 선수의 국가 연맹 및 WADA에 보고된다.

11.7 금지 물질 또는 그 대사산물·표지물질의 검출,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금지 물질 및 방법의 보유 또는 국제 치료용 면제 기준에 따라 발급된 적용 가능한 치료용 면제 조항에 부합하는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투여는 도핑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1.8 선수의 TUE 신청은 가능한 한 신속히, 비상 또는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FIAS 대회 참가 최소 30일 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TUE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결정은 선수의 FIAS 대회 참가 최소 7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11.9 선수는 FIAS RTP/TP에 속한 경우 ADAMS를 통해, 또는 FIAS 공식 웹사이트에 명시된 다른 방법으로 TUE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a) 해당 금지 물질 또는 금지 방법의 치료적 사용 필요성을 입증하는 적격 의사의 진술서 및
- b) 원진단 의사(들)의 기록(가능한 경우) 및 신청과 관련된 모든 검사, 실험실 조사 및 영상 검사 결과를 포함한 포괄적인 병력 기록

11.10 선수는 TUE 신청서와 해당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의

완전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 11.11 TUE 신청서는 적절히 작성된 신청서와 모든 관련 서류가 함께 접수된 후에만 FIAS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불완전한 신청서는 선수에게 반환되어 보완 후 재제출해야 한다.
- 11.12 FIAS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는 선수의 신청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정보, 검사 또는 영상 검사, 기타 정보를 선수 또는 그의 주치의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리고/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의료 또는 과학 전문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11.13 TUE 신청 및 FIAS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보완 과정에서 선수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선수 본인의 책임이다.

제3장 정보 수집 기준

제 12 조 정보 수집, 평가 및 활용

- 12.1 FIAS는 효과적이고 지능적이며 비례적인 검사 배분 계획 수립 및/또는 표적 검사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가능한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핑을 억제하고 탐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출처로부터 반도핑 정보를 획득, 평가 및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
- 12.2 FIAS는 반도핑 관리자 및/또는 FIAS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를 통해 선수 및 선수 지원 인력, 일반인, 검체 채취 인력, 실험실, 제약 회사, 국가 연맹, 법 집행 기관, 기타 규제 및 징계 기관, 언론 등 모든 가능한 출처로부터 반도핑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신할 책임이 있다.
- 12.3 FIAS는 반도핑 관리자 및/또는 FIAS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를 통해 수집 또는 접수된 반도핑 정보가 안전하고 기밀하게 처리되며, 정보 출처가 보호되고, 유출 또는 부주의한 공개 위험이 적절히 관리되며, 법 집행 기관, 기타 관련 기관 및/또는 제3자로부터 공유받은 정보가 합법적인 반도핑 목적만을 위해 처리, 사용 및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FIAS는 정보의 출처 성격과 수집 또는 수신 경위를 고려하여 수신된 모든 반도핑 정보의 관련성, 신뢰성 및 정확성을 평가할 책임이 있다.
- 12.4 FIAS는 반도핑 관리자 및/또는 FIAS 의료 및 반도핑 위원회를 통해 FIAS가 수집하거나 수신한 모든 반도핑 정보를 종합 및 분석하여, 추세 및 관계를 파악하여 FIAS가 효과적인 반도핑 전략을 수립하고/또는 (정보가 특정 사건과 관련된 경우) 반도핑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여 ISTI 제12.0조에 따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12.5 반도핑 정보는 FIAS 검사 배분 계획의 수립, 검토 및 수정 지원, 표적 검사 실시 시기 결정, 표적 정보 파일 생성 등에 활용된다. 해당 정보는 적절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반도핑 기관 및/또는 법 집행 기관 및/또는 기타 관련 규제 또는 징계 기관과 공유된다.

제 13 조 조사

13.1 비정상적 결과 및 부정적 패스포트 결과 조사

13.1.1 FIAS 반도핑 관리자는 FIAS를 대신하여 수행된 검사 및/또는 FIAS가 결과 관리 기관인 검사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결과 및 부정적 패스포트 결과를 기밀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조사한다. FIAS는 요청 시 WADA에 불리한 분석 결과, 비정상적 결과 및 기타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해당 선수의 수준
- 해당 선수가 제공한 소재 정보(있는 경우) 및 해당 정보가 불리한 분석 결과 또는 비정상적 결과를 초래한 시료 채취를 위해 선수 소재 파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 해당 시료 채취 시점이 선수의 훈련 및 경기 일정과 관련하여 언제였는지 및
- WADA가 결정한 기타 프로필 정보

13.2 FIAS 반도핑 관리자는 반도핑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음을 시사하는 기타 분석적 또는 비분석적 정보나 정보를 기밀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도핑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을 경우, FIAS 도핑 방지 관리자는 WADA에 조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고 이후 WADA의 요청에 따라 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13.3 FIAS는 가능한 도핑 규정 위반과 관련하여 해당 정보 및 문서를 인정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또는 그러한 증거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 조사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모든 관련 정보와 문서를 수집하고 기록할 것이다. FIAS 반도핑 관리자는 항상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조사 수행 과정, 조사 중 확인된 정보 및 증거의 평가, 그리고 조사 결과는 완전히 문서화된다. 조사 수행을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조사 자원을 활용할 것이다. 여기에는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관련 당국(다른 규제 기관 포함)으로부터 정보와 지원을 얻는 것이 포함될 수 있으나, 선수 생물학적 패스포트 프로그램, 부여된 조사 권한(예: 관련 문서 및 정보 제출 요구 권한, 잠재적 증인 및 조사 대상인 선수 또는 기타 인물에 대한 면담 권한), 또한 FIAS 반도핑 규정 제10.7.1조에 따라 상당한 협조를 제공한 대가로 선수 또는 기타 개인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된다. 선수 및 선수 지원 인원은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13.4 FIAS 반도핑 관리자는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이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한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 효율적이고 지체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선수 또는 기타 개인이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선수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경우, 모든 관련 절차적 단계가 시작되어야 한다. 반독성 규정 위반을 주장하는 선수 또는 기타 개인에 대한 절차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경우, FIAS 반도핑 관리자는 해당 결정과 그 사유를 서면으로 WADA 및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국가 연맹 및 국가 반도핑 기구에 통지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WADA 및/또는 국가 반도핑 기구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조사 관련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또는 얻은 교훈이 FIAS 검사 배분 계획 수립 및/또는 표적 검사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표적 검사 계획 수립에 활용하거나, 관련 기관과 공유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4장 결과 관리

제 14 조 FIAS 반도핑 청문회 패널의 구성 및 책임

- 14.1 FIAS 독립 운영 청문회 패널은 각 개별 사건별로 의장이 임명한다. 패널은 선수/선수 지원 인력과는 다른 국적의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의장이 FIAS 청문회 패널 위원으로 임명할 때, 각 위원은 또한 선언서에 명시된 사정 외에 당사자 어느 쪽의 관점에서든 자신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정이 자신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선언에 서명해야 한다.
- 14.2 FIAS 반도핑 청문 패널은 선수/선수 지원 인력이 제공한 잠재적 반도핑 규정 위반 관련 문서 및 사실의 검토를 담당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FIAS 반도핑 규정 및 본 절차에 따라 제재가 필요한 경우 이를 부과한다.

제 15 조 절차

- 15.1 도핑 규정 위반을 제외한 모든 사안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전화 또는 화상 회의로 조직될 수 있다. 절차는 공정하고 시기적절하며 중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에게 각자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를 제시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절차는 FIAS 반도핑 규정 제8조 제3항에 해당하는 반도핑 규정 위반 사건에도 적용된다.
- 15.2 기타 모든 반도핑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5.2.1 관련 당사자 및 해당 당사자의 국가 연맹은 공정하고 신속하며 중립적인 청문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선수 또는 기타 관련 당사자는 자비로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주장된 반도핑 규정 위반 사항과 잠재적 결과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통지받을 권리 및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가진다. 증인 및 전문가 소환권을 포함한 증거 제출권을 가진다. 전화 증언 또는 서면 제출의 수용 여부는 FIAS 반도핑 청문 패널의 재량에 따른다. 선수 또는 기타 관련자는 청문 시 통역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통역사의 선정 및 비용 부담은 FIAS

반도핑 청문 패널이 결정한다. 패널은 증거의 채택 또는 평가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

15.2.2 결정 사유(특히 자격 정지 기간의 근거 설명 포함)가 명시된 결정문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15.3 국가 연맹은 FIAS 반도핑 규정 제12.4조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연맹 소속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저지른 FIAS 반도핑 규정 위반과 관련된 모든 비용(실험실 수수료, 청문회 경비 및 출장비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FIAS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15.4 본 반도핑 규칙의 적용을 받는 선수 및 기타 인원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개최되는 청문회는 FIAS 청문 패널이 허용하는 경우 신속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 WADA, 해당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의 국가 연맹 및 국가 반도핑 기구는 관찰자로서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FIAS는 진행 중인 사건의 현황 및 모든 심리의 결과에 대해 그들에게 완전히 통보해야 한다.

15.5 선수 또는 기타 인물은 심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15.6 반도핑 규정 위반을 저지른 선수가 FIAS 또는 FIAS 반도핑 청문 패널의 결정에 명시된 대로 메달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는 FIAS 라이선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

제 16 조 항소

16.1 FIAS 반도핑 청문 패널의 결정은 FIAS 반도핑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인은 해당 결정 수령 후 21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FIAS에 서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16.2 기타 증거의 채택은 당사자의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6.3 항소인 또는 그 대리인과 FIAS 반도핑 청문회 패널의 대리인은 증인 심문 시 참석하여 증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6.4 당사자의 불출석은 절차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16.5 항소인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법률 고문 및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6.6 항소는 집행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본 문서는 2021년 9월 29일 FIAS 집행위원회 및 FIAS 의료·도핑방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